

# 공공도서관 공동보존서고 건립모형 연구

## A Model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Collaborative Repository for Public Libraries in Korea

윤 희 윤(Hee-Yoon Yoon)\*

### < 목 차 >

|                         |                      |
|-------------------------|----------------------|
| I. 서론                   | 건립모형                 |
| II. 시도별 공동보존서고 건립환경 분석  | 1. 공동보존서고 건립의 기본원칙   |
| 1. 공공도서관 수장공간 부족률       | 2. 시도별 공동보존서고 건축규모   |
| 2. 시도별 공동보존서고 건립순위      | 3. 공공도서관의 자료이관 및 소유권 |
| 3. 공동보존서고의 주요 기능과 업무    | 4. 공동보존서고 관리운영 주체    |
| 4. 공동보존서고 건립을 위한 입지조건   | IV. 요약 및 결론          |
| III. 지역대표도서관 중심의 공동보존서고 |                      |

###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공공도서관을 위한 공동보존서고 건립모형을 제안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공동보존서고 건립환경인 공공도서관 수장공간 부족률, 시도별 공동보존서고 건립의 우선순위, 수행해야 할 주요 기능과 업무, 바람직한 입지조건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공동보존서고 건립의 기본원칙, 건축규모, 공공도서관의 이관자료 기준과 소유권 문제, 바람직한 관리운영 주체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정부와 모든 광역시도는 조속히 공동보존서고를 설립·운영해야 한다.

키워드: 공동보존서고, 공동보존도서관, 지역대표도서관, 공공도서관, 공동보존서고 건립

### ABSTRACT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models for establishing the collaborative repository for public libraries in Korea. For this purpose, author analyzed the collection space shortage of public libraries, priority of establishment of collaborative repositories by province, key functions and practices to accomplish, and a desirable location. And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author proposed the basic principles and architectural scales of the collaborative repositories, transfer criteria and ownership of public library' collection, desirable management and operation unit of the collaborative repository. Therefore, the government and all of metropolitan must establish the collaborative repositories as soon as possible.

Keywords: Collaborative repository, Collaborative repository library, Regional central library, Public library, Establishment of the collaborative repository

\*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yhy@daegu.ac.kr)

• 논문접수: 2013년 7월 17일 • 최종심사: 2013년 8월 29일 • 게재확정: 2013년 9월 4일

## I. 서론

모든 공공도서관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장서관리를 전제로 당대의 지역주민에게 각종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후대의 접근·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서를 보존관리하는 지역문화기반시설이다. 이러한 공리를 중시한 공공도서관은 지난 반세기 이상 장서확충과 보존관리에 몰두하여 왔으며, 그 결과로 현재 대다수 공공도서관이 수장공간 부족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2005년도 국립중앙도서관 보존정책세미나, 2007년 『도서관협력망 운영실태 자료집』, 2008년 『도서관협력망 운영실태 조사에 관한 연구』 등에서 수장공간 문제가 시급한 현안으로 제기되었다는 점이 방증한다. 이에 주목한 정부는 2006년 12월 20일자로 전부 개정된 『도서관법』(법률 제8069호) 제23조에서 시도별 공공도서관 장서의 통합적 보존관리 책임을 지역대표도서관에 부과하였으며, 2008년 8월에는 대통령 소속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발표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정책과제 중에서도 ‘지역의 공공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추진체계 개선’의 추진전략으로 ‘지역대표도서관의 통합자료보존관 건립 추진’을 명시하였다. 그리고 2012년 2월 17일자로 일부 개정된 현행 『도서관법』(법률 제11310호) 제23조 제4호에서도 ‘지역의 도서관자료 수집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받은 자료의 보존’을 지역대표도서관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공도서관 수장공간 부족, 지역대표도서관의 법정 업무, 국가 중장기 정책문서 등을 종합하면 지역대표도서관 중심의 공동보존서고 건립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단언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각적인 타당성 분석을 전제로 건립모형을 제시해야 실천성을 담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수행된 극소수 선행연구<sup>1)</sup>마저 수장공간 부족 및 공동보존서고(또는 공동보존도서관) 건립에 대한 현직자 의견을 조사하는데 그치거나 건립의 당위성을 제시하고 원론적 방향을 제안하는데 머물고 있다. 환언하면 공동보존서고 건립의 타당성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입증하고 이를 전제로 최적 건립모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법리적, 정책적, 인식적, 현실적 측면에서 공동보존서고 건립의 타당성을 분석한 예비연구<sup>2)</sup>를 바탕으로 지역대표도서관 중심의 공동보존서고 건립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부연하면 지역별 공동보존서고의 건립환경인 시도별 수장공간을 분석하여 건립조건(공공도서관 수장공간 부족률, 시도별 공동보존서고 건립의 우선순위와 건립시기, 입지조건과 평가모형)을 제시하고 지역대표도서관 중심의 공동보존서고 건립모형(기본방향, 주요 기능과 업무, 건축규모, 자료이관과 소유권 귀속문제, 관리운영 주체)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강현민, “공공도서관 협력망을 이용한 공동보존도서관 및 국가보존도서관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7권, 제1호(2006. 3), pp.29-53 ; 신지연, 김유승, “지역대표도서관 중심의 공동보존도서관 설립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2권 제3호(2011. 9), pp.129-150.

2) 윤희운, “공공도서관 공동보존서고 건립의 타당성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4권, 제2호(2013. 3), pp.5-26.

## II. 시도별 공동보존서고 건립환경 분석

### 1. 공공도서관 수장공간 부족률

지역단위 공동보존서고의 건립환경을 분석하려면 공공도서관 수장공간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도별 공공도서관의 연면적과 적정 수장공간, 실제 소장책수, 과거 10년간의 연차 증가율 평균을 적용한 향후 10년간 장서증가량 추계 등을 각각 조합하여 수장공간 부족여부를 산출할 필요가 있다.

먼저 2010년말 공공도서관 통계데이터를 이용하여 시도별 공공도서관의 연면적, 적정 수장공간, 실제 소장책수를 집계하고, 과거 10년간 연차증가율 평균인 10.4%<sup>3)</sup>를 10%로 하향 조정하여 향후 10년간 수장해야 할 장서량을 추계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시도별 및 연도별 공공도서관 장서증가량 추계(2011~2020)

| 시도 | 건물 연면적 (㎡) | 적정 수장공간 (㎡)* | 실제 소장책수 (권) | 연도별 장서증가량 추계(단위 1,000권) |        |        |        |         |         |         |         |         |         |
|----|------------|--------------|-------------|-------------------------|--------|--------|--------|---------|---------|---------|---------|---------|---------|
|    |            |              |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서울 | 244,642    | 73,393       | 8,094,042   | 8,904                   | 9,794  | 10,773 | 11,850 | 13,035  | 14,339  | 15,773  | 17,350  | 19,085  | 20,994  |
| 부산 | 94,214     | 28,264       | 3,497,322   | 3,847                   | 4,232  | 4,655  | 5,121  | 5,633   | 6,196   | 6,816   | 7,498   | 8,248   | 9,073   |
| 대구 | 167,107    | 20,132       | 2,641,054   | 2,905                   | 3,196  | 3,516  | 3,868  | 4,255   | 4,681   | 5,149   | 5,664   | 6,230   | 6,853   |
| 인천 | 74,014     | 22,204       | 2,396,288   | 2,636                   | 2,900  | 3,190  | 3,509  | 3,860   | 4,246   | 4,671   | 5,138   | 5,652   | 6,217   |
| 광주 | 53,055     | 15,917       | 1,794,391   | 1,973                   | 2,170  | 2,387  | 2,626  | 2,889   | 3,178   | 3,496   | 3,846   | 4,231   | 4,654   |
| 대전 | 67,502     | 20,251       | 2,033,139   | 2,236                   | 2,460  | 2,706  | 2,977  | 3,274   | 3,601   | 3,961   | 4,357   | 4,793   | 5,272   |
| 울산 | 23,796     | 7,139        | 1,090,762   | 1,199                   | 1,319  | 1,451  | 1,596  | 1,756   | 1,932   | 2,125   | 2,338   | 2,572   | 2,829   |
| 경기 | 554,345    | 166,304      | 17,813,970  | 19,595                  | 21,555 | 23,710 | 26,081 | 28,689  | 31,558  | 34,714  | 38,185  | 42,004  | 46,204  |
| 강원 | 92,820     | 27,846       | 3,727,511   | 4,101                   | 4,511  | 4,962  | 5,458  | 6,004   | 6,604   | 7,264   | 7,990   | 8,789   | 9,668   |
| 충북 | 74,589     | 22,377       | 2,299,616   | 2,530                   | 2,783  | 3,061  | 3,367  | 3,704   | 4,074   | 4,481   | 4,929   | 5,422   | 5,964   |
| 충남 | 107,229    | 32,169       | 3,643,308   | 4,007                   | 4,408  | 4,849  | 5,334  | 5,867   | 6,454   | 7,099   | 7,809   | 8,590   | 9,449   |
| 전북 | 90,964     | 27,289       | 3,059,290   | 3,365                   | 3,701  | 4,071  | 4,478  | 4,926   | 5,419   | 5,961   | 6,557   | 7,213   | 7,934   |
| 전남 | 107,870    | 32,361       | 4,204,686   | 4,626                   | 5,089  | 5,598  | 6,158  | 6,774   | 7,451   | 8,196   | 9,016   | 9,918   | 10,910  |
| 경북 | 116,666    | 35,000       | 4,323,385   | 4,755                   | 5,231  | 5,754  | 6,329  | 6,962   | 7,658   | 8,424   | 9,266   | 10,193  | 11,212  |
| 경남 | 136,508    | 40,952       | 4,714,109   | 5,185                   | 5,704  | 6,274  | 6,901  | 7,591   | 8,350   | 9,185   | 10,103  | 11,113  | 12,224  |
| 제주 | 46,559     | 13,968       | 1,771,212   | 1,948                   | 2,143  | 2,357  | 2,593  | 2,852   | 3,137   | 3,451   | 3,796   | 4,176   | 4,594   |
| 계  | 2,051,880  | 585,566      | 67,104,085  | 73,812                  | 81,196 | 89,314 | 98,246 | 108,071 | 118,878 | 130,766 | 143,842 | 158,229 | 174,051 |

\* 적정 수장공간은 공공도서관 연면적의 30%를 적용함

3) 상계논문, p.19.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4권 제3호)

다음으로 시도별 공공도서관의 적정 수장공간에 보존할 수 있는 한계수장책수와 <표 1>에서 추계한 향후 10년간 공공도서관이 수장해야 할 장서량 대비 연도별 수장공간 부족률을 산출하면 <표 2> 및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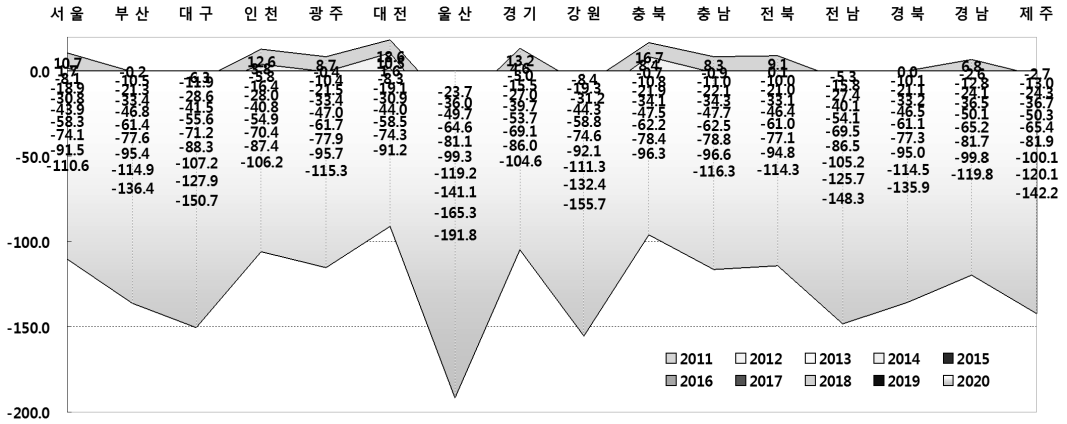
<표 2> 시도별 및 연도별 공공도서관 수장공간 부족률 추계(2011~2020)

| 시도 | 적정 수장공간 (㎡) | 한계 수장책수* (권) | 연도별 장서증가량 대비 수장공간 부족률 추계(%)** |       |       |       |       |       |        |        |        |        |
|----|-------------|--------------|-------------------------------|-------|-------|-------|-------|-------|--------|--------|--------|--------|
|    |             |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서울 | 73,393      | 9,966,777    | +10.7                         | +1.7  | -8.1  | -18.9 | -30.8 | -43.9 | -58.3  | -74.1  | -91.5  | -110.6 |
| 부산 | 28,264      | 3,838,236    | -0.2                          | -10.5 | -21.3 | -33.4 | -46.8 | -61.4 | -77.6  | -95.4  | -114.9 | -136.4 |
| 대구 | 20,132      | 2,733,956    | -6.3                          | -11.9 | -28.6 | -41.5 | -55.6 | -71.2 | -88.3  | -107.2 | -127.9 | -150.7 |
| 인천 | 22,204      | 3,015,288    | +12.6                         | +3.8  | -5.8  | -16.4 | -28.0 | -40.8 | -54.9  | -70.4  | -87.4  | -106.2 |
| 광주 | 15,917      | 2,161,521    | +8.7                          | -0.4  | -10.4 | -21.5 | -33.4 | -47.0 | -61.7  | -77.9  | -95.7  | -115.3 |
| 대전 | 20,251      | 2,750,063    | +18.6                         | +10.5 | +1.6  | -8.3  | -19.1 | -30.9 | -44.0  | -58.5  | -74.3  | -91.2  |
| 울산 | 7,139       | 969,499      | -23.7                         | -36.0 | -49.7 | -64.6 | -81.1 | -99.3 | -119.2 | -141.1 | -165.3 | -191.8 |
| 경기 | 166,304     | 22,584,068   | +13.2                         | +4.6  | -5.0  | -15.5 | -27.0 | -39.7 | -53.7  | -69.1  | -86.0  | -104.6 |
| 강원 | 27,846      | 3,781,502    | -8.4                          | -19.3 | -31.2 | -44.3 | -58.8 | -74.6 | -92.1  | -111.3 | -132.4 | -155.7 |
| 충북 | 22,377      | 3,038,789    | +16.7                         | +8.4  | -0.7  | -10.8 | -21.9 | -34.1 | -47.5  | -62.2  | -78.4  | -96.3  |
| 충남 | 32,169      | 4,368,573    | +8.3                          | -0.9  | -11.0 | -22.1 | -34.3 | -47.7 | -62.5  | -78.8  | -96.6  | -116.3 |
| 전북 | 27,289      | 3,702,089    | +9.1                          | +0.1  | -10.0 | -21.0 | -33.1 | -46.4 | -61.0  | -77.1  | -94.8  | -114.3 |
| 전남 | 32,361      | 4,394,601    | -5.3                          | -15.8 | -27.4 | -40.1 | -54.1 | -69.5 | -86.5  | -105.2 | -125.7 | -148.3 |
| 경북 | 35,000      | 4,753,000    | 0.0                           | -10.1 | -21.1 | -33.2 | -46.5 | -61.1 | -77.3  | -95.0  | -114.5 | -135.9 |
| 경남 | 40,952      | 5,561,312    | +6.8                          | -2.6  | -12.8 | -24.1 | -36.5 | -50.1 | -65.2  | -81.7  | -99.8  | -119.8 |
| 제주 | 13,968      | 1,896,824    | -2.7                          | -13.0 | -24.3 | -36.7 | -50.3 | -65.4 | -81.9  | -100.1 | -120.1 | -142.2 |
| 계  | 585,566     | 79,516,098   | +7.2                          | -2.1  | -12.3 | -23.6 | -41.1 | -55.2 | -64.5  | -80.9  | -99.1  | -118.9 |

\* 가령 서울시 공공도서관의 적정 수장공간(73,393㎡)에 개가제:폐가제=7:3을 적용하면 개가제 수장공간은 51,375㎡(73,393㎡×0.7), 폐가제 서고공간은 22,018㎡(73,393㎡×0.3)이며, 한계수장률을 최대 85%로 설정할 경우에 개가서고 표준서가(2권 6단 양면 서가)당 수장책수는 약 600권, 서가당 바닥면적은 5.3㎡이므로 1㎡당 113권(600권÷5.3㎡)을 수장할 수 있고 폐가서고 표준서가(2권 7단 양면 서가)당 수장책수는 약 700권, 서가당 바닥면적이 3.7㎡이므로 1㎡당 189권(700권÷3.7㎡)을 수장할 수 있다. 따라서 한계수장책수는 개가서고 수장책수 5,805,375권(51,375㎡×113권)과 폐가서고 수장책수 4,161,402권(22,018㎡×189권)을 합산한 9,966,777권이다.

\*\* 예컨대 서울시의 경우, <표 2>에서 2011년도 장서증가량 추계가 8,904,000권이므로 이를 한계수장책수인 9,966,777권으로 나눈 다음에 100을 곱하면 89.3%가 되는데, 이것은 연면적 중에서 적정 수장공간(30%)의 한계수장책수보다 적으므로 약 10.7%(100%-89.3%)를 여유공간으로 간주할 수 있다.

요컨대 7개 시도(부산, 대구, 울산, 강원, 전남, 경북, 제주)의 공공도서관은 2011년에 한계수장률을 초과하였고, 3개 시도(광주, 충남, 경남)는 2012년에 도달하였으며, 5개 시도(서울, 인천, 경기, 충북, 전북)는 2013년에, 그리고 대전은 2014년에 한계수장률에 직면한다. 따라서 모든 시도는 조속히 공공도서관 수장공간 부족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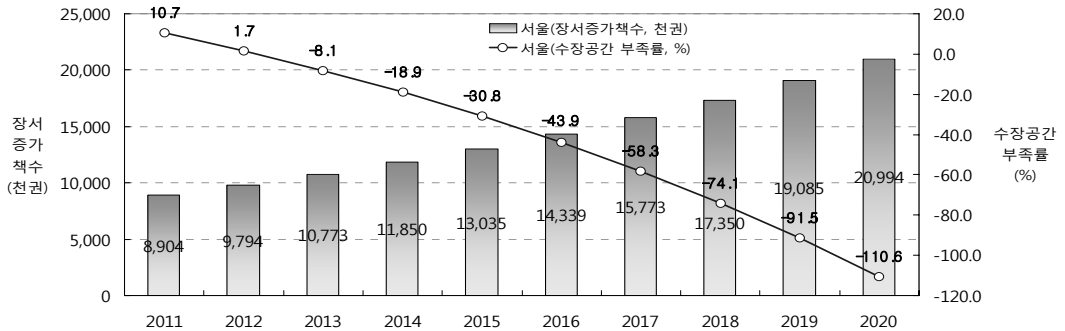
〈그림 1〉 시도별 공공도서관 수장공간 부족률 추계(2011~2020)

## 2. 시도별 공동보존서고 건립순위

2014년부터 모든 시도의 공공도서관이 수장공간 부족에 직면한다는 사실은 각각의 도서관이 장서를 대대적으로 폐기하지 않는 한 시도별로 공동보존서고를 건립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법」에 명시된 지역대표도서관 중심의 공동보존서고를 건립할 경우에 대지와 건물은 광역자치단체 재산이므로 광역시도가 재원을 부담하고 정부가 일부를 지원하는 대응자금(matching fund)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정부 및 지방행정 당국의 공공도서관 및 장서보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등을 감안하면 동시다발적 건립은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시도별 건립의 우선순위와 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시도별 공동보존서고 건립의 우선순위를 제시하려면 〈표 2〉에 근거한 공공도서관 수장공간의 부족률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가령 서울시 공공도서관의 적정 수장공간 대비 한계수장책수는 약 9,967천권이며, 이를 기준으로 향후 10년간 장서증가에 따른 수장공간 부족률을 추계하면 〈그림 2〉와 같다. 즉, 서울시는 2013년부터 수장공간이 부족하며 2017년에는 한계수장공간을 50% 이상, 2020년에는 100% 이상 초과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도서관이 법적 기준인 7%를 폐기하더라도 연차증가량으로 인한 수장공간 부족현상은 계속될 것이며, 따라서 도서관 신축계획에서 완공까지의 최소 기간인 3년을 적용하면 2015년에 공동보존서고 신축계획을 착수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나머지 15개 시도를 분석하되, 수장공간 부족률 50%를 기준으로 한 계획연도에 따른 공동보존서고 건립의 우선순위를 제안하면 〈표 3〉과 같다. 즉, 2013년에는 울산, 강원, 대구, 전남, 제주의 순으로, 2014년에는 부산, 경북, 경남의 순으로, 2015년에는 충남, 광주, 전북, 서울, 인천, 경기의 순으로, 2016년에는 충북과 대전의 순으로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2> 서울시 공공도서관의 연도별 장서증가 및 수장공간 부족률 추이

<표 3> 지역단위 공동보존서고 건립의 시도별 우선순위

| 계획 연도 | 지역단위 공동보존서고            |                             | 비고                                      |
|-------|------------------------|-----------------------------|---|
|       | 대상 시도                  | 건립의 우선순위                    |   |
| 2013  | 대구, 울산, 강원, 전남, 제주     | 울산 > 강원 > 대구 > 전남 > 제주      | 건립계획 착수연도의 우선순위 기준은 시도별 계획연도의 수장공간 부족률임 |
| 2014  | 부산, 경북, 경남             | 부산 > 경북 > 경남                |   |
| 2015  | 서울, 광주, 인천, 경기, 충남, 전북 | 충남 > 광주 > 전북 > 서울 > 인천 > 경기 |   |
| 2016  | 대전, 충북                 | 충북 > 대전                     |   |

\* 시도별 건립의 우선순위 모형은 2010년말 기준의 공공도서관 통계데이터(연면적, 소장책수, 적정 수장공간, 한계수장률), 과거 10년간 연차증가율 평균을 적용한 향후 10년간(2011~2020) 연도별 장서증가량 및 수장공간 부족률 추계 등을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므로 통계데이터 적용연도를 달리하면 그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2011년 또는 2012년도 통계데이터를 사용할 경우에 시도별로 새로 설립되는 도서관이 포함되면 건립의 우선순위가 조정될 수 있다.

### 3. 공동보존서고의 주요 기능과 업무

지역단위 공동보존서고는 시도별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소속의 공공도서관이 이관하는 자료를 중심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시설이다. 따라서 모든 공동보존서고가 수행해야 할 주요 기능은 중핵적 및 배타적 기능인 집중적 보존관리, 보완적 및 추가적 기능인 제한적 자료수집, 그리고 부차적 및 선택적 기능인 이용자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중핵적 기능인 집중적 보존관리는 공동보존서고를 건립해야 하는 최대 명분인 동시에 반드시 수행해야 할 배타적 기능을 말한다. 여기에는 당해 시도의 공공도서관이 매년 이관하는 자료와 지역대표도서관이 보존을 요청하는 자료를 집중 관리하는 기능 외에 파오손 자료의 수선과 복원, 귀중서 등의 대체본 제작, 보존정책과 기법의 개발, 이관자료 및 폐기기준 제정, 보존관련 조사연구, 보존시스템 및 프로그램 개발, 세미나 및 연수교육 실시, 참여관 및 관련기관과의 연락조정 창구, 교류·협력, 자문·지원 등이 포함된다.

다음으로 보완적 기능인 공동보존서고의 제한적 자료수집은 집중적 보존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 기능이다. 부연하면 지역대표도서관 장서개발 지원, 공공도서관 이관자료를 확인·분류하여 보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본 및 결호의 보충, 파오손 자료의 동일본 구입, 개별관이 입수하기 어려운 희색문헌과 향토자료, 미소장자료 등을 위한 수집·개발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부차적 기능인 이용자 서비스는 공동보존서고에 축적된 자료를 중심으로 제공하는 선택적 기능을 말한다. 세부 내용은 서지정보 검색지원서비스, 내방객 열람대출 및 복사서비스, 도서관 상호대차 및 원문제공서비스, 온라인 참고정보서비스 등이다. 그러나 귀중서를 제외한 대다수 자료는 이용가치가 매우 낮기 때문에 직접적 서비스 기능도 미약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주요 기능을 수행하여 지역거점형 공동보존서고로서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각 기능을 뒷받침하는 업무가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기능별 업무의 중요성과 상대적 비중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기능과 업무를 연계하여 구체화하면 <표 4>와 같다. 물론 시도가 공동보존서고를 건립·운영할 때 설정하는 기능별 무게중심에 따라 업무의 범주와 내용, 중요성은 달라질 수 있다.

<표 4> 공동보존서고의 주요 기능별 수행업무의 중요성

| 구 분                  | 주요 업무내용                  |   | 중요성 |
|----------------------|--------------------------|---|-----|
| 중핵<br>·<br>배타적<br>기능 | ■ 집중적 보존관리               | · 공공도서관 이관자료의 집중적 보존관리<br>· 지역대표도서관 및 다른 관공이 위탁관리 의뢰자료의 보존관리<br>· 보존서고의 주기적 장서점검 및 평가 | ●   |
|                      | ■ 수선과 복원                 | · 귀중서 등의 물리적 및 화학적 복원<br>· 파오손자료의 수선, 재제본, 복원<br>· 대량 탈산처리, 세척, 훈증소독, 열화대책 수립 등       | ●   |
|                      | ■ 대체본 제작                 | · 고서, 귀중서, 희귀서의 대용매체(영인본, 복사본) 제작<br>· 파오손자료의 대체본 제작 및 접근이용의 편의성을 위한 디지털화             | ●   |
|                      | ■ 보존정책과 기법의 개발           | · 중장기 보존정책 개발과 지원<br>· 자료유형별 보존기법의 개발과 확산   | ●   |
|                      | ■ 각종 기준의 제정과 개정          | · 이관, 제적·폐기, 보존부수 등에 대한 지침·기준의 제개정<br>· 공동보존서고 운영 및 서비스 지침의 제개정                       | ●   |
|                      | ■ 조사연구                   | · 지역 내 도서관 자료보존 실태조사의 지원 및 대행<br>· 과학적 보존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활동 및 보존관련 세미나 개최                 | ●   |
|                      | ■ 교육훈련                   | · 지역 내 보존실무자 연수 및 인턴교육 실시<br>· 국립중앙도서관 보존관련 연수교육프로그램 지원                               | ●   |
|                      | ■ 중개기능                   | · 공동보존서고 참여관의 자료이관, 소유권, 비용부담 등의 협의·조정<br>· 이관된 복본자료의 재활용을 위한 중개형 창구기능                | ○   |
|                      | ■ 교류·협력                  | · 시도별 공동보존서고와의 교류 및 협력<br>· 국내외 자료보존 관련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 ○   |
|                      | ■ 자문·지원                  | · 보존서고 운영, 보존전략, 문제점, 시설장비 등에 대한 자문과 지원<br>· 재난예방 및 피해자료의 복원 지원                       | ○   |
| 보완<br>·              | ■ 장서개발 지원과 결본<br>· 결호 보충 | · 지역대표도서관의 장서개발 지원<br>· 이관된 자료 중 전집 등의 결본, 연속간행물 결호의 보충                               | ●   |

8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4권 제3호)

|                  |   |  |   |
|------------------|---|--|---|
| 추가적<br>기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파오손자료 동일본 구입</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파오손이 심한 자료의 동일본 또는 유사본 수집</li> <li>대출, 복사, 상호대차로 인한 훼손·절취자료의 대체본 수집</li> </ul>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소장 회색문헌·향토 자료 수집</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별관 미소장 회색문헌(정부간행물, 연구보고서, 학위논문 등) 수집</li> <li>개별관이 입수하기 어려운 시도단위 향토자료 등의 수집</li> </ul> | ㉠ |
| 부차·<br>선택적<br>기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지정보 검색서비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관자료의 재정리, 자체 서지 및 원문DB 구축과 검색지원서비스</li> <li>지역단위 및 범국가적 서지DB와의 연계서비스</li> </ul>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방객을 위한 각종 서비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방문객을 위한 열람대출, 자료복사, 스캐닝 서비스</li> <li>자기주도형 학습공간과 편의시설 제공</li> </ul>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호대차 및 원문제공 서비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대표도서관을 위한 상호대차·원문제공서비스(ILL/DDS)</li> <li>지역 내 도서관 등을 위한 상호대차서비스</li> </ul>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라인 정보서비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정보상담서비스</li> <li>전자우편을 이용한 질의응답 및 스마트폰 최신정보 주지서비스</li> </ul>               | ○ |

● 높음 ㉠ 보통 ○ 낮음

#### 4. 공동보존서고 건립을 위한 입지조건

모든 시도의 공동보존서고 건립은 입지선정에서 출발한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건립할 것인가에 따라 입지조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건립방식을 검토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대다수 주요 선진국에서는 지역대표도서관의 내부 공간을 증축·확장하는 방법, 동일한 부지 또는 인접공간에 별도건물로 건축하는 방법, 원격 부지에 보존전용 건물로 신축하는 방법, 민간소유 재고창고를 임대하는 방법 등을 적용하여 공동보존서고를 건립·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모든 지역대표도서관의 입지와 위치, 건물구조, 지상층 및 지하층의 구성비율, 여유부지 등을 검토한 결과, 기존 건물을 증축하거나 인접된 부지에 별도건물로 신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대방식의 경우, 이관·보존하는 장서를 완벽하게 보존하여 당대 뿐만 아니라 후대의 접근·이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대안이 아니다. 따라서 공동보존서고는 신축을 전제로 시도별 제반여건과 기능적 측면을 고려하여 최적 입지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먼저 시도별 제반여건의 경우, 자연지리적 조건은 지형지세와 개발가능한 부지인지의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다. 어느 시도를 불문하고 특히 개발이 가능한 부지의 요건은 표고 150m 이하, 경사 17° 이하를 충족시키는 곳을 후보지로 선정해야 한다. 교통여건적 측면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지리적 분포, 지역주민의 접근수단(지하철, 택시, 시내버스 승용차)과 편의성,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인접성, 외지인의 접근성 등을 주요 변수로 간주하여 1시간 내외로 공동보존서고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공간구조적 조건은 당해 도시의 공간체계 구상, 대생활권별 공간기능 배분계획 등을 검토하여 기능성과 접근성이 우수한 위치가 이상적이다. 다만 도심은 부지매입비가 고가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대체부지 활용성도 검토하되, 불가능하면 지역대표도서관에서 가까운 부도심을 물색해야 한다.

다음으로 공동보존서고의 핵심기능과 입지조건을 연계하여 상대적 중요성을 제시하면 <표 5>와



같다. 중핵·배타적 기능의 측면에서는 부지확보 용이성, 교통지리적 접근성, 재난 대비성을 가장 중시해야 하며, 수장공간 확장성도 비교적 중시해야 한다. 보완·추가적 기능의 관점에서는 교통지리적 접근성이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재난 대비성과 수장공간 확장성이 비교적 중요한 입지조건에 속한다. 부차·선택적 기능의 입장에서는 교통지리적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이 재난 대비성인 반면에 부지확보 용이성과 수장공간 확장성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

〈표 5〉 공동보존서고의 기능별 입지조건과 상대적 비중

| 기능         | 입지조건                                    | 상대적 비중    |           |            |           |
|------------|---|-----------|-----------|------------|-----------|
|            |   | 부지확보의 용이성 | 교통지리적 접근성 | 각종 재난의 대비성 | 수장공간의 확장성 |
| ■ 중핵·배타적기능 | 이관자료의 집중적 보존관리, 조사연구, 교육훈련, 교류·협력 등     | ●         | ●         | ●          | ●         |
| ■ 보완·추가적기능 | 결본·결호, 파오손자료의 보충 또는 구입 미소장 회색문헌 등의 수집   | ○         | ●         | ●          | ●         |
| ■ 부차·선택적기능 | 내방객 및 원격이용을 위한 서지정보 제공, 열람대출, ILL/DDS 등 | ○         | ●         | ●          | ○         |

● 매우 중요 ● 비교적 중요 ○ 보통

이러한 입지조건에 부합하는 최적 후보지를 결정하려면 공동보존서고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복수 후보지를 선정하고 답사한 후에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입지조건별 공동보존서고의 최적 후보지 평가모형을 제시하면 〈표 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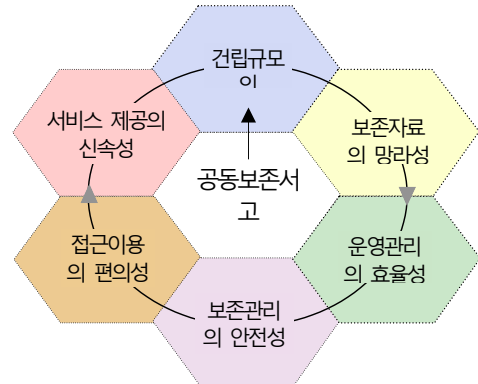
〈표 6〉 공동보존서고의 최적 후보지 평가모형

| 최적 후보지 평가기준 |      |                 | 배점 | 가중치 | 평가척도 |    |    |   |   |  |
|-------------|------|-----------------|----|-----|------|----|----|---|---|--|
|             |      |                 |    |     | 1    | 2  | 3  | 4 | 5 |  |
| 일반적 조건      | 자연지리 | 개발가능한 부지의 요건    | 5  | 10  | 30   |    |    |   |   |  |
|             |      | 지형지세의 양호성       | 5  |     |      |    |    |   |   |  |
|             | 교통여건 | 공공도서관의 지리적 분포   | 5  | 10  |      |    |    |   |   |  |
|             |      | 시간적 접근성(1시간 기준) | 5  |     |      |    |    |   |   |  |
|             | 공간구조 | 부지매입비(대체부지 활용성) | 5  | 10  |      |    |    |   |   |  |
|             |      | 지역대표도서관과의 인접성   | 5  |     |      |    |    |   |   |  |
| 기능적 조건      | 중핵기능 | 부지확보의 용이성       | 5  | 20  | 40   |    |    |   |   |  |
|             |      | 교통지리적 접근성       | 5  |     |      |    |    |   |   |  |
|             |      | 각종 재난의 대비성      | 5  |     |      |    |    |   |   |  |
|             |      | 수장공간의 확장성       | 5  |     |      |    |    |   |   |  |
|             | 보완기능 | 교통지리적 접근성       | 5  | 15  |      |    |    |   |   |  |
|             |      | 각종 재난의 대비성      | 5  |     |      |    |    |   |   |  |
|             |      | 수장공간의 확장성       | 5  |     |      |    |    |   |   |  |
|             | 부차기능 | 교통지리적 접근성       | 5  | 5   |      |    |    |   |   |  |
|             | 계    |                 |    | 70  |      | 70 | 70 |   |   |  |

### Ⅲ. 지역대표도서관 중심의 공동보존서고 건립모형

#### 1. 공동보존서고 건립의 기본원칙

시도별 지역대표도서관이 「도서관법」 제23조 제 4호에 근거하여 당해지역에 산재하는 공공도서관을 위한 지역장서보존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려면 공동보존기능을 겸하는 건물을 신축하거나 외부에 별관형태의 공동보존서고를 건립·운영해야 한다. 이를 위한 기본원칙은 <그림 3>처럼 건립규모의 경제성, 보존자료의 망라성, 운영관리의 효율성, 보존관리의 안전성, 접근이용의 편의성, 서비스 제공의 신속성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3> 공동보존서고 건립·운영의 기본원칙

첫째, 건립규모의 경제성은 시도별 공공도서관의 한계수량률, 연차증가율 등을 감안하여 이관·보존할 장서총량을 기준으로 규모를 최적화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가령 어떤 광역시의 모든 공공도서관이 공동보존서고로 이관할 자료가 연평균 2만권이고 지역대표도서관이 50년간 유지할 수 있는 보존서고를 건립할 계획이라면 산술적으로 최대 100만권을 수장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하지만 이관된 자료의 폐기나 재활용, 디지털화, 밀집서가 등에 따른 실제 수장량은 더 적을 것이므로 건립 규모를 축소해야 규모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보존자료의 망라성은 공공도서관이 공동보존서고로 이관하는 자료의 형태나 유형에 제한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왜냐하면 시도별로 공동보존서고를 건립할 경우에 대다수 공공도서관의 장서개발은 제로성장정책을 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한계수량률을 초과하는 자료는 그 형태나 유형을 불문하고 이용도, 최신성, 물리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모두 이관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운영관리의 효율성은 지역대표도서관이 외부에 별관건물을 신축하는 방식으로 공동보존서고를 건립할 때 투입비용을 고정시킨 상황에서 산출물을 극대화하는 원칙이다. 이 때의 투입비용은 공동보존서고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이고, 산출은 수장공간의 단위당 보존책수를 의미하므로 연간 투입비용 대비 보존책수가 많을수록 효율성이 증가한다.

넷째, 보존관리의 안전성은 공동보존서고를 건립·운영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원칙이다. 공공도서관이 공동보존서고로 자료를 이관하는 주된 목적은 수장공간 부족을 해소하고 귀중서 등을 안전하게 보존하는데 있다. 따라서 공동보존서고는 자연적 재해(지진, 홍수 등), 인위적 훼손(상호대차,

복사서비스, 열람 등에 따른 파손), 환경적 조건(온습도, 냉난방과 공조설비, 조명환경), 재질적 문제(종이의 경화, 산성화 등) 등으로부터 자료를 안전하게 보존해야 아카이브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원형보존 및 가역성 원칙이 수반되어야 한다.

다섯째, 접근이용의 편의성은 공동보존서고의 기능적 정체성 및 건립위치와 직결되는 원칙이다. 공동보존서고가 완벽한 보존관리와 서비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경우, 전자에 무게중심을 두더라도 방문 이용자를 위한 접근이용의 편의성과 상호대차 및 문헌제공서비스의 신속성을 감안한 위치 선정이 중요하다. 따라서 공동보존서고를 건립할 때는 접근이용의 편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서비스 제공의 신속성은 공동보존서고를 건립하는 목적 내지 이유가 자료를 안전하게 보존하는데 있지만, 저이용 또는 희귀자료에 대한 직접 방문이나 상호대차시스템을 이용한 원문요청이 있을 경우에 신속하게 서비스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특히 폐쇄형 창고방식이 아닌 지역대표도서관을 신속하거나 인접지역에 별관형식으로 건립하여 도서관 기능을 수행할 때는 이용요구가 발생하면 적시에 서비스해야 한다.

## 2. 시도별 공동보존서고 건축규모

시도별 공동보존서고 건축규모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고밀도 보존시설의 모형, 최종 목표연도의 수장책수, 수장공간 1㎡당 수장책수 등이 결정되어야 한다.

먼저 여러 국가에 운영되는 공동보존서고는 하버드 모형(Harvard Model), 자동서고검색시스템(Automated Storage and Retrieval System), 기타 모형으로 대별할 수 있다.<sup>4)</sup> HM은 여러 도서관이 적은 건축비로 공간활용 및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공동보존시설인 반면에 ASRS는 개별도서관이 수장용량을 확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일종의 자동서고시스템으로서 HM보다 건축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보존과 동시에 신속한 검색시스템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양자의 개념적 특징, 장단점, 주요 사례를 간추리면 <표 7>과 같다. 그러나 국내 공동보존서고는 시도 내의 모든 공공도서관이 참여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개별도서관을 위한 보존시설이 아니므로 HM에 더 가깝지만, 검색시스템과 이용서비스도 강조하는 통상적 도서관 기능을 겸해야 한다는 점에서 ASRS 속성도 다수 내포하고 있다. 부연하면 시도별 공동보존서고는 모든 공공도서관을 위한 중핵적 기능을 수행하는 보존시설인 동시에 부차적 및 선택적 기능인 내방객과 원격 이용자를 위한 서지정보서비스, 열람대출서비스, ILL/DDS 등을 제공하는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4) Lizanne Payne, *Library Storage Facilities and the Future of Print Collections in North America*(Oct. 2007), p. 16. <<http://www.oclc.org/programs/publications/reports/2007-01.pdf>> [cited 2012. 10. 20].

〈표 7〉 하버드형 보존시설(HM)과 자동서고검색시스템(ASRS)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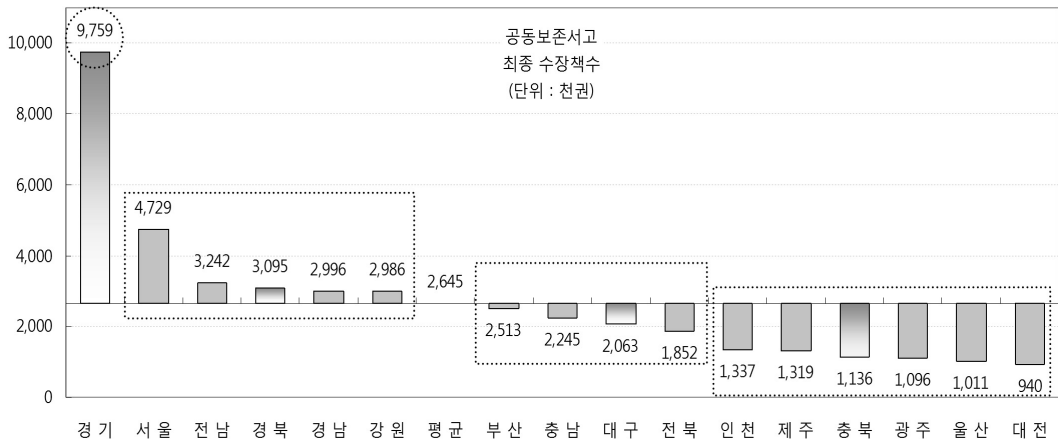
| 구분          | HM   | ASRS   |
|-------------|--|--|
| 개념적 특징과 장단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적으로 복수 도서관이 참여하며, 캠퍼스 밖에 건립하여 24시간 내에 캠퍼스 구성원에게 문헌을 제공함</li> <li>· 저비용 건축 및 공간 활용성 극대화를 도모함</li> <li>· 이용도가 낮은 자료를 보존하므로 신속한 검색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보존시설 내에 독서공간을 제공함</li> <li>· 통상 점진적으로 증축(모듈당 150만권 수장)</li> <li>· 기본시설(하역, 처리공간 등)이 존재하여 증축비가 저렴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상 여러 도서관을 위한 공유시설로 설계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도서관을 위한 보존시설임</li> <li>· 공간 효율성과 신속한 검색시스템을 제공함</li> <li>· 전통적 개가제 환경에서의 이용자 경험을 존중함</li> <li>· 대개 연도별 장서증가에 맞추어 여분의 축적공간을 증축하는 추세임</li> <li>· 대개 HM보다 건립비가 더 많이 들어감</li> </ul> |
| 주요 사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에 사례가 많음. ReCAP(Research Collections Access and Preservation), WRLC(Washington Research Library Consortium), MLSC(Minnesota Library Access Center)가 대표적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에 사례가 많음. National Library of Norway, National Library of Slovenia, National Library of Spain, British Library 등의 보존서고가 대표적임</li> </ul>   |

다음으로 2020년을 목표연도로 설정할 경우, 공동보존서고 수장책수의 총량은 시도별 공공도서관 수장공간의 한계수장책수, 2020년의 총장서수 추계, 이관할 자료의 평균 중복률을 근거로 산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동보존서고로 이관하는 도서관 자료의 중복률은 30% 내외이므로 이를 제외한 시도별 평균 최종 수장책수는 〈표 8〉와 같으며, 이를 균집하면 〈그림 4〉와 같다. 그리고 4개 구간 백분위는 하위 25%가 1,182천권, 50%가 2,154천권, 상위 75%가 3,070천권, 100%가 9,759천권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100만권을 최종 수장책수로 설정하여 공동보존서고를 건립해야 할 시도는 6개(광주, 인천, 대전, 울산, 충북, 제주)이고, 200만권을 목표장서로 삼아야 할 시도는 4개(부산, 대구, 충남, 전북)이며, 300만을 수장할 보존서고를 건립해야 할 시도는 5개(서울, 강원, 전남, 경북, 경남)이고, 경기도는 1,000만권을 수장할 수 있는 보존서고를 구상해야 한다.

〈표 8〉 시도별 공동보존서고 최종 수장책수 추계(단위 : 천권)

| 시도 | 한계 수장책수 (A) | 2020 예측치 |                           |               | 백분위수  |       |       |       |
|----|-------------|----------|---------------------------|---------------|-------|-------|-------|-------|
|    |             | 총장서수 (B) | 장서수(중복률 제외) [C=B-(B×0.3)] | 최종 수장책수 (C-A) | 25%   | 50%   | 75%   | 100%  |
| 서울 | 9,967       | 20,994   | 14,696                    | 4,729         | 1,182 | 2,154 | 3,070 | 9,759 |
| 부산 | 3,838       | 9,073    | 6,351                     | 2,513         |       |       |       |       |
| 대구 | 2,734       | 6,853    | 4,797                     | 2,063         |       |       |       |       |
| 광주 | 2,162       | 4,654    | 3,258                     | 1,096         |       |       |       |       |
| 인천 | 3,015       | 6,217    | 4,352                     | 1,337         |       |       |       |       |
| 대전 | 2,750       | 5,272    | 3,690                     | 940           |       |       |       |       |
| 울산 | 969         | 2,829    | 1,980                     | 1,011         |       |       |       |       |
| 경기 | 22,584      | 46,204   | 32,343                    | 9,759         |       |       |       |       |
| 강원 | 3,782       | 9,668    | 6,768                     | 2,986         |       |       |       |       |

|     |       |        |       |       |   |   |   |   |
|-----|-------|--------|-------|-------|---|---|---|---|
| 충 북 | 3,039 | 5,964  | 4,175 | 1,136 |   |   |   |   |
| 충 남 | 4,369 | 9,449  | 6,614 | 2,245 |   |   |   |   |
| 전 북 | 3,702 | 7,934  | 5,554 | 1,852 |   |   |   |   |
| 전 남 | 4,395 | 10,910 | 7,637 | 3,242 |   |   |   |   |
| 경 북 | 4,753 | 11,212 | 7,848 | 3,095 |   |   |   |   |
| 경 남 | 5,561 | 12,224 | 8,557 | 2,996 |   |   |   |   |
| 제 주 | 1,897 | 4,594  | 3,216 | 1,319 |   |   |   |   |
| 평균  | 4,970 | 10,878 | 7,615 | 2,645 | - | - | - | - |



〈그림 4〉 공동보존서고 건립을 위한 시도별 최종 수장책수와 균집화

마지막으로 4개 구간으로 대별한 목표 수장책수별 공동보존서고의 건축규모를 산출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보존공간 1㎡당 수장책수를 기준으로 고정서가시스템, 밀집서가시스템, 자동서가시스템으로 세분하여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정서가시스템(Fixed Shelving Systems)은 많은 도서관이 지하층을 보존서고로 운영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공동보존서고를 건립할 때 대다수 자료를 폐가형 고정서가에 배치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시스템은 초기 비용이 적게 들고 폐가형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요청하면 서고에 진입하여 자료를 검색·열람할 수 있다. 다만 자연적 열화(산성화, 경화 등)에 따른 주기적 처치와 서고소독 등이 필요하다. 시도별 공동보존서고 건립에 FSS를 적용하여 목표 수장책수별 건축규모를 산출하면 〈표 9〉와 같다.

둘째, 밀집서가시스템(Compact Shelving Systems)은 폐가제 또는 개가제 서고의 서가간격을 최소화하거나 통로를 제거함으로써 단위면적당 수장량을 극대화하는 방식이다. 이를 공동보존서고

〈표 9〉 고정서가형 공동보존서고의 건축규모 산출모형

| 구 분           | 적용기준과 산출내역   |
|---------------|--|
| 한계수장률         | · 최대 적용기준 85%(개가제 서고의 일반적인 한계수장률은 70%~75%임)  |
| 표준서가의 규격      | · 7단 양면서가(W × H) : 1.83m(2련) × 210m(7단 × 30cm / 단)   |
| 서가당 점유면적      | · 서가간격 1.5m(선반 깊이 0.25m × 2개 + 실제 서가간 간격 1m) × [서가길이 1.83m (0.9m × 2련 + 여유율 3cm) + 통로폭 0.61m] = 3.7㎡ |
| 서가당 수장책수      | · 선반당 25권(도서의 평균 두께 3cm 적용) × 선반 28개(7단 2련 양면) = 700권  |
| 1㎡당 수장책수      | · 700권 ÷ 3.7㎡ = 189권   |
| 목표 수장책수별 건축규모 | · 100만권 : 100만권 ÷ 189권 = 5,291㎡(1,603평)  |
|               | · 200만권 : 200만권 ÷ 189권 = 10,582㎡(3,207평)   |
|               | · 300만권 : 300만권 ÷ 189권 = 15,873㎡(4,810평)   |
|               | · 1,000만권 : 1,000만권 ÷ 189권 = 52,910㎡(16,033평)  |

에 적용하면 고정서가시스템보다 75%~100%<sup>5)</sup>를 더 수장할 수 있고 자료를 이용하지 않을 때의 서가간격이 최소화되므로 먼지가 쌓이지 않고 조명도 비치지 않아 자료수명이 연장된다. 반면에 전기시설 및 기계장비를 도입하는데 따른 초기 설치비용이 많으며 유지·보수비도 계상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존시설 용량이 한계에 도달할 때 신규 설비 및 자료 재배가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그 외에도 서고공간의 용도를 쉽게 변경하기 어렵고, 이용자 거부감도 우려된다. 시도별 공동보존서고 건립에 CSS를 적용하여 목표 수장책수별 건축규모를 산출하면 〈표 10〉과 같다.

〈표 10〉 밀집서가형 공동보존서고의 건축규모 산출모형

| 구 분           | 적용기준과 산출내역   |
|---------------|--|
| 한계수장률         | · 최대 적용기준 85%(개가제 서고의 일반적인 한계수장률은 70%~75%임)  |
| 유니트 구성        | · 서가 5개를 1개의 유니트로 하고 유니트당 통로를 1개 두는 것으로 가정   |
| 표준서가의 규격      | · 7단 양면서가(W × H) : 1.83m(2련) × 210m(7단 × 선반 높이 30cm)   |
| 유니트당 점유면적     | · 유니트 간격 1.35m + [유니트 넓이 2.6m(선반 깊이 0.26m × 선반수 10개(서가 5개의 양면) × 유니트 깊이 1.83m)] + 주통로 1.5m = 7.61㎡ |
| 유니트당 수장책수     | · 유니트당(2련 7단 양면서가 × 5개) 수장책수 : 선반당 25권 × 선반 28개 × 서가 5개 = 3,500권                                   |
| 1㎡당 수장책수      | · 3,500권 ÷ 7.61㎡ = 460권  |
| 목표 수장책수별 건축규모 | · 100만권 : 100만권 ÷ 460권 = 2,174㎡(659평)  |
|               | · 200만권 : 200만권 ÷ 460권 = 4,348㎡(1,316평)  |
|               | · 300만권 : 300만권 ÷ 460권 = 6,522㎡(1,976평)  |
|               | · 1,000만권 : 1,000만권 ÷ 460권 = 21,740㎡(6,588평)   |

5) Frazer G. Poole, "Compact Shelving," In *Running Out of Space : What Are the Alternatives?*, edited by Gloria Novak(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78), p.49.

셋째, 산업계 자동창고출납시스템을 도서관에 응용한 자동서고시스템(Automated Storage Systems)은 컴퓨터, 제어장치, 크레인, 선반과 컨테이너로 구성된다. 각각 고유번호가 부착된 선반과 소형 컨테이너에 소장되는 자료는 컴퓨터 작동으로 대출데스크까지 이동하고, 반납시에도 자동으로 재배가된다. 이 시스템의 최대 장점은 수장책수가 전통적 배가방식의 10~15배에 달하므로 1㎡당 1,890~2,835권을 수장할 수 있어 보존공간의 활용성이 극대화되고, 에너지 절감효과도 크다. 그 외에 직원과 이용자의 서고출입이 불필요하므로 보존환경을 관리하는데 유리하고, 자료분실 및 훼손의 가능성도 거의 없다. 그러나 초기에 막대한 설치비용을 투입해야 하고, 서고와 대출데스크가 연계되어야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일반서고의 하중계수가 1feet<sup>2</sup>당 46.7~56kg(1㎡당 503~603kg)<sup>6)</sup>인데 비하여 ASS는 설비중량으로 인하여 1feet<sup>2</sup>당 평균 112.5~135kg(1㎡당 1,211~1,453kg)의 내구력을 확보해야 한다.<sup>7)</sup> 시도별 공동보존서고 건립에 ASS를 적용하여 목표 수장책수별 건축규모를 산출하면 <표 1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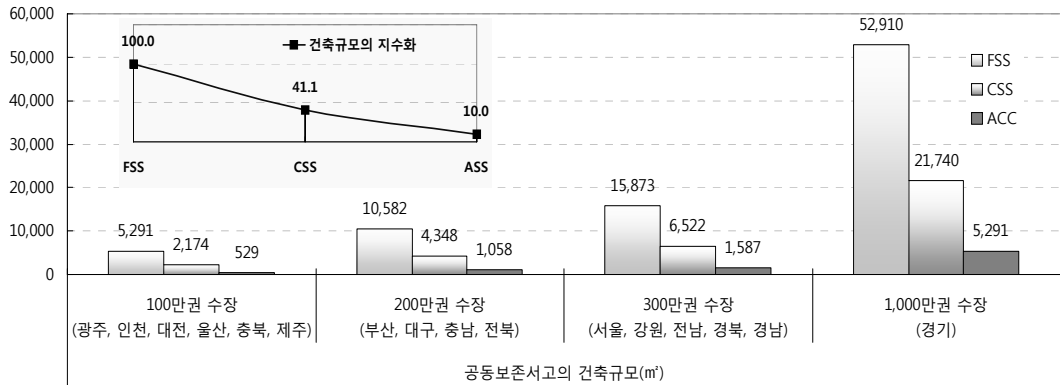
<표 11> 자동서고형 공동보존서고의 건축규모 산출모형

| 구 분              | 적용기준과 산출내역  | 비 고                           |
|------------------|---|-------------------------------|
| 적재하중             | · 1㎡당 1,200kg   | -                             |
| 한계수장률            | · 적용기준 100%   | 일반적 기준<br>70%~75%             |
| 1㎡당 수장책수         | · 개가제 서고(2련 6단 양면서가) 수장책수(113권)의 10배 = 1,130권<br>· 고정서가시스템(2련 7단 양면서가) 수장책수(189권)의 10배 = 1,890권 | 최소 기준(10배)<br>적용              |
| 목표 수장책수별<br>건축규모 | · 100만권 : 100만권 ÷ 1,890권 = 529㎡(160평)   | 고정서가시스템<br>수장책수의 10배 기준<br>적용 |
|                  | · 200만권 : 200만권 ÷ 1,890권 = 1,058㎡(321평)   |                               |
|                  | · 300만권 : 300만권 ÷ 1,890권 = 1,587㎡(481평)   |                               |
|                  | · 1,000만권 : 1,000만권 ÷ 1,890권 = 5,291㎡(1,603평)   |                               |

이상에서 산출한 공동보존서고 건립모형에 따른 목표 수장책수별 건축규모를 간추리면 <그림 5>와 같다. FSS를 적용할 경우에 100만권을 수장목표로 삼아야 할 6개 시도(광주, 인천, 대전, 울산, 충북, 제주)는 5,291㎡, 200만권을 수장목표로 하는 4개 시도(부산, 대구, 충남, 전북)는 10,582㎡, 300만을 수장해야 할 5개 시도(서울, 강원, 전남, 경북, 경남)는 15,873㎡, 1,000만권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경기도는 52,910㎡의 공동보존서고를 건립해야 한다. CSS를 채택할 경우에 100만권 수장하기 위한 건축규모는 2,174㎡, 200만권은 4,348㎡, 300만은 6,522㎡, 1,000만권은 21,740㎡를, ASS를

6) General B. McCabe ed., *The Smaller Academic Library : A Management Handbook*(New York: Greenwood, 1988), p.207.

7) Frazer G. Poole, *op. cit.*, p.53; Elaine Cohen and Aaron Cohen, *Automation, Space Management, and Productivity : A Guide for Libraries*(New York: R.R. Bowker, 1981), pp.113-114.



<그림 5> 공동보존서고의 건립모형별 및 목표 수장책수별 서고 건축규모와 지수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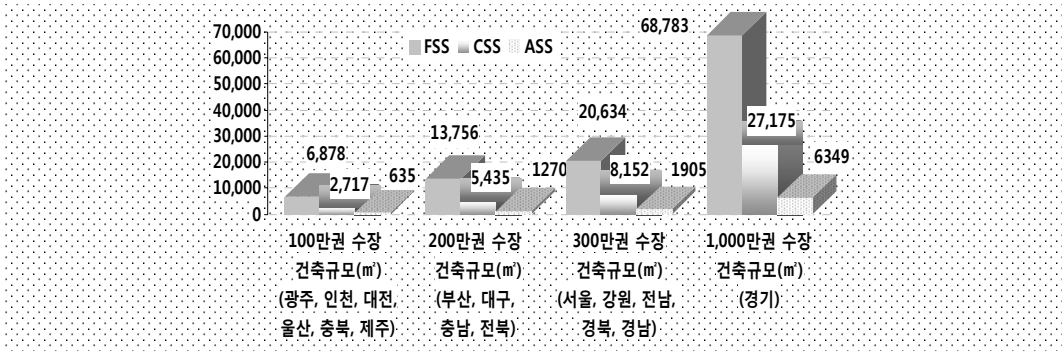
채택하면 100만권 수장목표는 529㎡, 200만권은 1,058㎡, 300만은 1,587㎡, 1,000만권은 5,291㎡의 공동보존서고를 계획해야 한다.

한편, 목표 수장책수별 건축규모는 시도별로 공공도서관이 이관하는 자료의 보존공간이다. 따라서 창고를 포함한 사무공간, 내방객을 위한 최소 이용공간, 통로·화장실·계단·비상구 등의 공유공간도 계상해야 한다. 사무공간과 공유공간은 건립모형의 종류를 불문하고 수장공간의 10%를 각각 배분하면 무난한 반면에 이용공간은 건립모형별로 차등 적용하여 FSS에는 수장공간의 10%, CSS에는 5%를 배분하고 ASS에는 별도로 배분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시도별로 건립해야 하는 공동보존서고에 수장할 목표장서를 기준으로 건축규모의 최종모형을 제시하면 <표 12> 및 <그림 6>과 같다. 그 가운데 공동보존서고가 수행해야 할 중핵적 기능, 보완적 기능, 추가적 기능을 감안하면 모빌랙을 장착한 CSS(밀집서가시스템)가 가장 적합한 모형이다. 다만 시도에 따라 미래 확장성에 대비하여 3가지 모형을 혼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표 12> 공동보존서고의 건립모형별 및 공간별 건축규모 모형

| 건립 모형<br>수장 목표 | FSS    |       |       |       |        | CSS    |       |       |       |        | ASS   |       |       |       |       | 적용 시도                  |
|----------------|--------|-------|-------|-------|--------|--------|-------|-------|-------|--------|-------|-------|-------|-------|-------|------------------------|
|                | 수장 공간  | 사무 공간 | 이용 공간 | 공유 공간 | 계      | 수장 공간  | 사무 공간 | 이용 공간 | 공유 공간 | 계      | 수장 공간 | 사무 공간 | 이용 공간 | 공유 공간 | 계     |                        |
| 100 만권         | 5,291  | 529   | 529   | 529   | 6,878  | 2,174  | 217   | 109   | 217   | 2,717  | 529   | 53    | 0     | 53    | 635   | 광주, 인천, 대전, 울산, 충북, 제주 |
| 200 만권         | 10,582 | 1,058 | 1,058 | 1,058 | 13,756 | 4,348  | 435   | 217   | 435   | 5,435  | 1,058 | 106   | 0     | 106   | 1,270 | 부산, 대구, 충남, 전북         |
| 300 만권         | 15,873 | 1,587 | 1,587 | 1,587 | 20,634 | 6,522  | 652   | 326   | 652   | 8,152  | 1,587 | 159   | 0     | 159   | 1,905 | 서울, 강원, 전남, 경북, 경남     |
| 1,000 만권       | 52,910 | 5,291 | 5,291 | 5,291 | 68,783 | 21,740 | 2,174 | 1,087 | 2,174 | 27,175 | 5,291 | 529   | 0     | 529   | 6,349 | 경기                     |





〈그림 6〉 공동보존서고의 건립모형별 전체 건축규모 모형

### 3. 공공도서관의 자료이관 및 소유권

자료이관 및 소유권 귀속문제는 공동보존서고 건립뿐만 아니라 관리운영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도서관이 수장하는 자료의 종류를 분석한 다음에 이관기준을 설정하고 소유권 귀속에 관한 법령을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먼저 자료종류의 경우, 2010년말을 기준으로 759개 공공도서관(공립 740개, 사립 19개)의 장서를 분석한 결과, 도서는 67,104,085권이고 잡지는 129,945종이며 비도서는 4.3%(3,051,789점)에 불과하다.<sup>8)</sup> 결국 시도를 불문하고 공공도서관이 공동보존서고로 이관할 자료는 도서 및 잡지가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도서의 구체적인 대상은 고문서, 귀중서와 희귀서, 향토자료, 일반 대중서 등이며, 그 중에서도 대중서 비중이 절대적이다.

다음으로 이관할 자료기준을 결정해야 하는데, 2006년에 국립중앙도서관이 ‘권역별 공동자료보존관 건립’을 위하여 33개관을 설문한 결과에서 이관순위가 희귀 및 귀중자료 등 보존 가치가 있는 자료, 발행연도가 오래된 자료, 이용률이 저조한 자료, 복본, 폐기대상자료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sup>9)</sup> 따라서 시도별 공공도서관은 자료의 이용도, 물리적 상태, 실물보존의 필요성을 결정기준으로 삼아 자체보존, 매체변형, 제적폐기, 이관보존 등을 취사선택해야 한다. 그 가운데 공동보존서고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준은 이용도가 낮은 각종 자료, 물리적으로 양호한 도서와 잡지, 실물보존용 희귀서·귀중서·향토자료 등이다. 이들의 우선순위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원형보존이 중요한 자료(희귀서, 귀중서, 향토자료 등)
- ② 폐기대상으로 선정한 자료

8) 한국도서관협회, 2011 한국도서관연감(서울: 동협회, 2011), p.441.

9) 국립중앙도서관, 국내도서관 자료보존현황 및 공동보존 구축방안 : 2006 국립중앙도서관 열린정책세미나 자료집, p.139.

- ③ 이용률이 저조한 자료(구관자료, 복본, 정보가치가 극히 낮은 자료 등)
- ④ 복본 또는 내용의 대부분이 중복성인 자료
- ⑤ 발행연도가 오래된 자료(1970년 이전의 과학기술자료, 개정 전의 법령자료 등)
- ⑥ 개정판이 발간된 경우의 구관자료(사전, 명감, 편람, 가이드북, 통계집 등)
- ⑦ 전문적인 수복이 필요할 정도로 파손된 자료(도서, 잡지 등)
- ⑧ 매체변형(디지털, 마이크로화 등)을 통하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자료

마지막으로 공동보존서고로 이관할 자료의 소유권 귀속방안은 주요 선진국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51년에 건립된 미국의 공동보존서고인 MILC(Midwest Inter-Library Center)는 소유권을 자료의 명의 및 자료 자체의 완전기증형, 명의를 제외한 자료의 영구기탁형과 무기기탁형, 그리고 수장공간만 차용하는 임대보관형으로 구분하고 있다.<sup>10)</sup> 1994년 일본 국립대학도서관협의회가 발표한 「보존조서관에 관한 조사연구」는 “공동보존서고로의 자료이관은 주로 관리전환에 의한 다. 즉, 이관자료의 소유권은 공동보존서고에 이관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자료를 이관할 때 소유권 이전을 수반하도록 제한한 바 있다.<sup>11)</sup> 이러한 선례를 참고하여 공동보존서고로 이관할 때의 소유권을 공공도서관 입장에서 유형화하면 비이전형(공공도서관 보유형), 이전형(공동보존서고 귀속형), 절충형(일부 이전형)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들의 개념과 함의, 장점과 촉진요소, 단점과 저해요소를 비교한 <표 13>을 보면 비이전형은 공공도서관이 대여형식으로 자료를 공동보존서고에 이관하기 때문에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 형태이고, 이전형은 공공도서관이 이관하는 모든 자료에 대한 소유권을 공동보존서고로 양도하는 것이며, 절충형은 이관하는 자료의 유형이나 가치에 따라 비이전형과 이전형을 혼용하는 방식이다. 어느 유형이 가장 바람직한지를 판단하려면 실정법상 자료의 재산적 성격, 소유권 이전의 가능성, 공공도서관 및 지역대표도서관의 실무적 부담, 공동보존서고의 정체성 및 기능적 측면에서 논증할 필요가 있다.

첫째, 모든 공공도서관의 장서가 공유재산인지 아니면 물품인지, 그 일부를 공동보존서고로 이관하는 것이 실정법에 저촉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실정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을 발췌한 <표 14>를 중심으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10) 共同保存図書館研究グループ, “私立大學図書館協力による共同保存図書館設置の可能性,” (2010), p.2. <<http://www.jaspul.org/e-kenkyu/public/2008-2009/pdf/kyoryoku.pdf>> ; 共同保存図書館研究グループ, “私立大學図書館協力による共同保存図書館設置の可能性,” (2009), pp.3-4. <<http://www.jaspul.org/e-kenkyu/public/2008-2009/pdf/kyoryoku.pdf>> [cited 2013. 3. 20].

11) 國立大學図書館協議會 保存図書館に關する調査研究班, “保存図書館に關する調査研究報告書,” (1994). <[http://www.janul.jp/j/publications/reports/44/44\\_0.html](http://www.janul.jp/j/publications/reports/44/44_0.html)> [cited 2013. 3. 30].

〈표 13〉 공공도서관 자료이관에 따른 소유권 귀속유형 비교

| 구 분         | 비이전형<br>(공공도서관 보유형)  | 이전형<br>(공동보존서고 보유형)   | 절충형<br>(일부 이전형)   |
|-------------|--|---|---|
| 개념과<br>함의   | · 공공도서관이 자료만 이관하고 소유권을 공동보존서고로 이전하지 않는 형태로 위탁관리를 의미한다.                                 | · 공공도서관이 이관하는 모든 자료의 소유권을 공동보존서고로 양도하는 형태로 관리전환을 의미한다.  | · 공공도서관이 대다수 이관자료의 소유권은 공동보존서고로 이전하되, 재산적 및 보존적 가치가 높은 일부 자료의 소유권을 보유하는 형태로서 관리전환과 위탁관리를 포섭한다.  |
| 장점과<br>촉진요소 | · 공공도서관이 자료이관에 적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높다.<br>· 공동보존서고는 위탁관리에 따른 보존관리 부담이 소유권을 보유할 때보다 적다.       | · 공공도서관은 보존관리 부담이 줄고 여유공간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br>· 공동보존서고는 자료의 자의적 정리, 폐기처분, 재활용이 가능하다.                         | · 공공도서관은 대다수 자료의 소유권을 양도함으로써 보존관리 및 여유공간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다.<br>· 공동보존서고는 공공도서관의 자료이관을 촉진하는데 유리하고 대다수 이관자료를 자의적으로 정리, 폐기처분, 재활용할 수 있다.       |
| 단점과<br>저해요소 | · 공공도서관은 이관자료가 공유재산이므로 최종 관리책임이 있다.<br>· 공동보존서고는 위탁관리로 인한 폐기나 재활용 등의 적극적 행위를 수행하기 어렵다. | · 공공도서관은 장서수 감소에 대한 심리적 저항, 공유재산 처분 책임 문제 등의 부담이 있다.<br>· 공동보존서고는 공공도서관이 소유권 이전 때문에 비협조적일 때 건립·운영이 파행적일 수 있다. | · 공공도서관은 재산적 및 보존적 가치가 높은 자료를 선별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br>· 공동보존서고는 모든 이관자료의 소유권 확보를 통한 중핵기능(지역장서의 재정리, 폐기처분, 재활용 등)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약이 따를 수 있다. |

〈표 14〉 공공도서관 자료이관과 관련된 법령의 주요 내용

| 법령                      | 조문                              | 주요 내용  |
|-------------------------|---------------------------------|--|
| 공유재산 및<br>물품관리법         | 제2조<br>(정의)                     | 2. “물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 동산을 말한다.<br>가. 현금 ; 나. 유가증권 ; 다.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br>6. “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의 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 출자 등의 방법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의 소유권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                         | 제63조<br>(물품소관의 전환)              | · 물품관리관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물품을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할 수 있다.  |
| 공유재산 및<br>물품관리법<br>시행령  | 제62조<br>(물품소관의 전환)              | ① 물품관리관은 법 제63조에 따라 소관물품을 같은 회계 내에서 다른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하거나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다른 회계의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할 때에는 ...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제91조<br>(적용배제)                  | ①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법 제49조, 제52조~제53조, 제57조~제58조, 제60조,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제69조, 제75조, 제78조, 제86조, 제93조~제94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br>6. 도서, 서화, 예술작품, 동식물과 그 밖의 특수 물품                                      |
| 지방자치단체<br>재무회계 운영<br>규정 | 제3장<br>(재무회계과목총괄표<br>(COA)와 해설) | (1) 1401 도서관<br>다. 자산 구분처리의 유의사항<br>① 청사 내에 일정공간에 도서실을 설치하여 주민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 청사 전체와 관련 부속시설을 일반유형자산으로 구분함. 이 경우 도서실의 집기와 도서 등은 일반유형자산 과목 내 집기비품으로 구분함   |

첫째, 공공도서관 장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 제1호 및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행정자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동시에 동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물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제91조에 근거한 동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 제6호(도서, 서화, 예술작품, 동식물과 그 밖의 특수 물품)를 법 제49조~제94조<sup>12)</sup>의 대다수 조항이 적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품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은 법리적 물이해에서 기인한다. 이 조항은 도서를 물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열거한 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행정안전부령인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 제3장(재무회계과목총괄표(COA)와 해설) 1400(주민편의시설)은 ‘자산 구분처리의 유의사항’에서 “청사 내 일정공간에 도서실을 설치하여 주민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 . . 청사 전체와 관련 부속시설을 일반유형자산으로 구분하고, 도서관 소관장서는 자산화 기준과 관계없이 모두 자산화하여 집기비품으로 등록하고 내용연수는 표준내용연수인 5년을 공통적으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대다수 공공도서관은 예산계정 중 ‘자산취득비’로 도서를 구입·등록하는 사례가 많으며, 이를 위하여 도서를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으로 간주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제정한 ‘물품관리조례’에 따라 관리하며, 기타 자산취득비로 구입하지 않은 도서는 물품으로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은 장서가 일반재산이든 물품이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자치단체별 ‘물품관리조례’에 근거하여 공동보존서고로 이관할 때 소유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관할 수 있다.

둘째, 자료이관에 따른 실무적 측면에서 공공도서관은 이관하는 대다수 대중서의 소유권을 양도함으로써 배가된 장서의 노후화, 수장공간 부족, 서고관리 어려움, 이용자 불평·불만 등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반면에 귀중서 등을 이관할 경우에 반영구적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음에도 소유권 양도에 따른 심리적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공동보존서고 입장에서는 모든 이관자료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재정리, 데이터관리, 수선복원, 폐기처분, 재활용 등을 이중적으로 수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도서관별로 장서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데 따른 실무적 부담이 가중된다. 따라서 소유권 귀속주체는 이전형, 즉 모든 이관자료의 소유권이 공동보존서고에 귀속되는 모형이 최선이며, 재산적 및 보존적 가치가 높은 자료에 한정하여 공공도서관이 소유권을 보유하는 절충형은 차선책으로 간주할 수 있다.

셋째, 공동보존서고는 단기적으로 공공도서관 이관자료와 지역대표도서관 노후장서, 중장기적으로 다른 관종의 장서까지도 수용하여 명실상부한 타임캡슐로서의 기능과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는 공공도서관이 자료만 이관하고 소유권을 보유하는 형태보다 자료를 이관할 때

1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도서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조항은 제49조(물품의 분류), 제52조(물품관리관), 제53조(물품출납공무원), 제58조(물품관리기준의 설정), 제60조(재물조사 등), 제62조(물품의 현황 작성 등), 제63조(물품 소관의 전환), 제64조(물품의 정비), 제69조(보관의 원칙), 제75조(비용의 결정 등), 제78조(비용품의 양여), 제86조(물품의 자연감모), 제9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제94조(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 및 분임)이다.

소유권도 공동보존서고로 함께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4. 공동보존서고 관리운영 주체

시도별로 공동보존서고를 건립할 경우에 관리운영시스템 주체의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관리운영할 수 있는 여러 주체를 검토하여 최적 모형을 선택해야 한다.

우선 공동보존서고의 건립주체는 시도이고 지역대표도서관 별관형식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지역대표도서관이 운영관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운영사례를 검토한 결과, 공동보존서고 운영주체로는 지역대표도서관, 비영리법인(NPO), 민간기업(창고업자)을 상정할 수 있다. 지역대표도서관이 운영할 경우에는 직영체제이고, 비영리법인과 민간 창고업자가 운영하면 위탁관리이다.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하면 <표 15>와 같다.

<표 15> 공동보존서고의 관리운영 주체별 장단점 비교

| 운영주체         | 장 점  | 단 점  |
|--------------|--|--|
| 지역 대표 도서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립근거, 수행업무 등에서 법적 근거가 분명하고 당위성도 있다.</li> <li>· 자료보존 및 서비스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하다.</li> <li>· 이관주체인 공공도서관 등과의 업무협조, 커뮤니케이션이 NPO나 민간기업보다 원활할 수 있다.</li> <li>· 지역장서의 장기적, 안전한 보존관리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가 부지를, 국가 및 자치단체가 건축비를 분담해야 한다.</li> <li>· 서고운영을 위한 인력충원, 시설관리, 기능수행에 필요한 비용부담이 증가한다.</li> <li>· 자료의 자연적 열화에 대처하고 파손을 수복하려면 아웃소싱이 불가피하다.</li> <li>· 공공도서관과의 수평적 대등관계보다 수직적 상하관계의 조직문화가 창출될 가능성이 높다.</li> </ul>                          |
| 비영리 법인 (NPO)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기업보다 서고업무의 운영비가 적게 든다.</li> <li>·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NPO 단체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고, 법인 주민세도 감면되므로 운영비 측면에서 민간기업보다 유리하다.</li> <li>· 설립·활동 취지가 사회적 기여이므로 여러 전문가가 동참할 경우에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 등을 활용한 운영관리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다수 인력이 비상근직이므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렵다.</li> <li>· 운영경험과 고정자산이 없으며 재정이 취약하다.</li> <li>· 공동보존서고에 적합한 시설과 운영경험이 거의 없다.</li> <li>· 현실적으로 보존기능을 수행하는 법인은 전혀 없다. 설립하려면 광역자치단체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가 필요하며, 특히 전자의 활동범위는 당해 시도로 한정된다.</li> </ul> |
| 민간 창고업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개 자료보존 공간과 시설을 소유하고 있어 건축비 부담이 없다.</li> <li>· 자료이관이나 반출입 등의 단순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지역대표도서관이나 NPO보다 유리하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고업자는 시설의 전체나 일부를 임차·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방대한 자료를 반입하거나 배송하기 어렵다.</li> <li>· 이관되는 자료의 반출입기능 외의 선별작업, 데이터 관리,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데 따른 운영관리비가 상승한다.</li> </ul>  |

그 가운데 도서관 자료보존에 주력하는 비영리법인은 국내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16개 시도가 공동보존서고 운영재단을 설립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민간 창고업자는 이관자료를 수장·관리하는 기능 외의 선별작업, 데이터 관리, 수선복원, 열람대출서비스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대안이 될 수 없다. 반면에 법적 근거가 확실한 지역대표도서관 중심의 관리운영은 이관주체인 공공도서관

등과의 업무협조, 보존실무와 서비스 경험, 지역장서 보존관리에 대한 사회문화적 책무와 타입캡슐적 정체성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모형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다만 국가와 광역시도는 건립부지 확보, 건축비 부담, 관리운영을 위한 인력충원 및 예산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대표도서관은 공공도서관과 호혜정신에 입각한 수평적 대등관계를 정립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 IV. 요약 및 결론

시도별 지역대표도서관이 주도하는 공동보존서고 건립 및 운영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동보존서고 건립의 타당성을 분석한 예비연구를 논거로 삼아 공동보존서고 건립환경을 분석하고 다양한 건립모형을 제시하였다. 그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보존서고 건립의 기본원칙은 건립규모의 경제성, 보존자료의 망라성, 운영관리의 효율성, 보존관리의 안전성, 접근이용의 편의성, 서비스 제공의 신속성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시도별 공동보존서고의 건립모형 및 목표 수장책수별 건축규모는 FSS를 적용할 경우, 100만권을 수장목표로 하는 6개 시도(광주, 인천, 대전, 울산, 충북, 제주)는 5,291㎡, 200만권을 수장목표로 삼아야 할 4개 시도(부산, 대구, 충남, 전북)는 10,582㎡, 300만을 수장해야 할 5개 시도(서울, 강원, 전남, 경북, 경남)는 15,873㎡, 1,000만권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경기도는 52,910㎡를, CSS를 채택할 경우에 100만권 수장을 위한 건축규모는 2,174㎡, 200만권은 4,348㎡, 300만은 6,522㎡, 1,000만권은 21,740㎡를, ASS를 채택하면 100만권 수장목표는 529㎡, 200만권은 1,058㎡, 300만은 1,587㎡, 1,000만권은 5,291㎡의 규모를 계획해야 한다.

셋째, 공공도서관이 공동보존서고로 이관할 자료기준은 원형보존이 중요한 자료, 폐기대상으로 선정한 자료, 이용률이 저조한 자료, 복본 또는 내용의 대부분이 중복성인 자료, 발행연도가 오래된 자료, 개정판이 발간된 경우의 구판자료, 전문적인 수복이 필요할 정도로 파손된 자료, 매체변형을 통하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자료의 순으로 우선 적용해야 한다.

넷째, 공동보존서고로 자료를 이관할 때의 소유권 귀속문제는 실정법상 공공도서관 자료의 재산적 성격, 소유권 이전의 가능성, 공공도서관 및 지역대표도서관의 실무적 부담, 공동보존서고의 정체성 및 기능적 측면을 감안하면 완전한 이전형인 모든 이관자료의 소유권이 공동보존서고로 귀속되는 모형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공동보존서고 관리운영 주체의 경우, 시도가 지역대표도서관 별관형식으로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확실한 지역대표도서관이 관리운영을 주관할 때 자료를 이관하는 공공도서관 등과의 업무협조, 보존실무와 서비스 경험, 지역장서 보존관리에 대한 사회문화적 책무와 타입캡슐적 정체성 등의 측면에서 유리하다.

모든 공공도서관은 지식정보 중심의 지역문화기반시설이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장서개발 및 보존관리가 전제되어야 하며, 그 우산적 역할을 지역대표도서관이 수행하도록 실정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대표도서관은 대다수 공공도서관이 양적 확충정책의 결과로 직면하고 있는 수장공간 부족문제를 공동보존서고 건립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및 모든 광역시도가 사안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속히 공동보존서고를 건립해야 한다.

## 참고문헌

- 강현민. “공공도서관 협력망을 이용한 공동보존도서관 및 국가보존도서관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7권, 제1호(2006. 3), pp.29-53.
- 국립중앙도서관. 국내도서관 자료보존현황 및 공동보존 구축방안 : 2006 국립중앙도서관 열린정책 세미나 자료집.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2006.
- 신지연, 김유승. “지역대표도서관 중심의 공동보존도서관 설립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2권, 제3호(2011. 9), pp.129-150.
- 윤희윤. “공공도서관 공동보존서고 건립의 타당성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4권, 제2호(2013. 3), pp.5-26.
- 한국도서관협회. 2011 한국도서관연감. 서울: 동협회, 2011.
- Murray-Rust, Catherine. “Library Storage as a Preservation Strategy.” *Advances in Librarianship*, Vol.27(2010), pp.159-183.
- Cohen, Elain and Aaron Cohen. *Automation, Space Management, and Productivity : A Guide for Libraries*. New York: R.R. Bowker, 1981.
- McCabe, General B. ed. *The Smaller Academic Library : A Management Handbook*. New York: Greenwood, 1988.
- Payne, Lizanne. *Library Storage Facilities and the Future of Print Collections in North America*. Dublin : OCLC Programs & Research, 2007.
- Poole, Frazer G. “Compact Shelving.” In *Running Out of Space : What Are the Alternatives?*, edited by Gloria Novak.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78.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Kang, Hyen-Min. "A Study on the Operation of the National Repository Library and Repository Library by Using of Public Library Cooperative Network."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37, No.1(Mar. 2006), pp.29-53.
- Korean Library Association. *Korean Library Yearbook*. Seoul : The Association, 2011.
- National Library of Korea. "Cooperative Preservation of Library Collection in Korea." *2006 Open Policy Seminar*. Seoul: The Library, 2006.
- Shin, Ji-Yeon & Kim, You-Seung.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Plan for the Cooperative Repository Libraries Based on Regional Central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22, No.3(2011), pp.129-150.
- Yoon, Hee-Yoon. "Feasibility Analysis of Establishment of the Collaborative Repository for Public Libraries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44, No.2(June. 2013), pp.5-26.